

<p>(「異議 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          그러면 趵貞順委員이 修正動議하신 서울特別市立圖書館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中 附則「이」條例는 1992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」를 「이」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」라는 修正案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울特別市 教育監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异議 없으십니까?</p> <p>(「異ぎ 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          异議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.</p> <p>(議事権 3打)</p> <p>(參 照)          서울특별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    서울특별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       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          제3조(사용료) 도서관 이용자로부터 "서울특별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"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.          제4조 제1항중 "지방사서관(4급)"을 "지방사서기관"으로 "지방사서관(5급)"을 "지방사서사무관"으로 한다.          [별표]를 별지와 같이 한다.          부 칙        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 <p><b>3. 서울特別市教育學藝에關한表彰條例中改正條例案(서울特別市教育監 提出)</b></p> <p>(11時 11分)</p> <p>○委員長代理 金相復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教育學藝에關한表彰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.</p> <p>(議事権 3打)</p> <p>이 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은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質疑와 答辯은 一問一答式으로 할 수 있습니다.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?</p> <p>(「異ぎ 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          質疑 안 계시죠? 이상으로 質疑와 答辯을 종결하겠습니다. 그러면 서울特別市教育學藝에關한表彰條例中改正條例에 대하여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异ぎ 없으십니까?</p> <p>(「異ぎ 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</p>	<p>異ぎ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.          (議事権 3打)</p> <p>(參 照)         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중          개정조례안         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        제3조중 "공적상" 다음에 "창안상"을 삽입한다.          제5조 제3호를 삭제한다.          제8조를 삭제하고 제6조를 제7조로,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         제6조(창안상) 창안상은 교육 및 교육행정 능률 향상을 위하여 전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.          제9조 제1항중 "공적상" 다음에 "및 창안상"을 삽입한다.         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  <p>제10조(표창대상자의 추천) ① 교육감 표창은 각급기관의 장이 추천한다.          다만, 하급교육청 소속 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천한다.          ② 교육장 표창은 하급교육청의 국장·유치원장·국민학교장 및 중학교장이 추천한다.          ③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</p> <p>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          제11조(공적심사위원회설치)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하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.         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</p> <p>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          제12조(이증표창의 금지)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.</p> <p>제13조의 제목 "추서"를 "대리자의 수령"으로 한다.</p> <p>제14조를 제15조로 하되 동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         제14조(표창대장의 비치) 표창권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표창대장을 비치하여</p> </p>
---	--